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5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김영호·박지원·이병진

남인순 • 한민수 • 박희승

박홍근 • 복기왕 • 진선미

문정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 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 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% 수준에 그치고 있어,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,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,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% 이상 반영하 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(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추천위원회는 직접·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대학의 장 후 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⑨ 해당 대학의 교원, 직원(조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학생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·정직 중인 교원 및 직원과 휴학·정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.
- ①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. 다만,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(총 투표 결과에 대하여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투표 결과가 환산 및 반영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,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① 교원,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대학의 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.
- ② 그 밖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

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3제1항 중 "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"를 "제24조제8항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4조(대학의 장의 임용) ①・②	제24조(대학의 장의 임용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	<u><</u> 삭 제>		
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			
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			
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			
<u>야 한다.</u>			
1.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			
 해당 대학 교원, 직원 및 학 			
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			
<u> 따른 선정</u>		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⑧ 추천위원회는 직접·비밀투		
	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대학의		
	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		
<u><신 설></u>	⑨ 해당 대학의 교원, 직원(조		
	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		
	같다) 및 학생은 대학의 장 후		
	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가		
	진다. 다만, 선거일 공고일 현		
	재 휴직ㆍ정직 중인 교원 및		
	직원과 휴학·정학 중인 학생		
	은 제외한다.		

<신 설>

<신 <u>설></u>

<신 설>

제24조의3(대학의 장 후보자 추 제24조의3(대학의 장 후보자 추 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)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, 직원 및 학생 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 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「선거

⑩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 로 한다. 다만,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(총 투표 결과에 대하여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투표 결과가 환산 및 반영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, 학 생의 투표반영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① 교원, 직원 및 학생별 각 투 표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대학의 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.

① 그 밖에 대학의 장 후보자 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) ① 제24조제8항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-----

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구·시
·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구
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"라 한
다)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
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